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現況 및 國際化 方案

目 次

I. 우리나라의 保險市場 現況	1
1. 市場規模	1
가. 收入保險料	1
나. 總資産	2
다. 世界保險市場에서 韓國保險産業의 位置	3
2. 保險産業別 市場構造	6
가. 損害保險産業	6
나. 生命保險産業	15
II. 保險監督體系 및 保險制度	19
1. 保險監督體系	19
가. 財務部	20
나. 保險監督院	20
다. 保險審議委員會	21
라. 其他機關	21
2. 保險制度 및 運營	21
가. 保險業務領域과 料率體系	21
나. 保險募集制度	22
다. 保險資産의 運用	23
라. 消費者 保護를 위한 制度的 裝置	24
III. 保險産業의 國際化 方案	26
1. 國內産業의 合理化 方案	26
가. 自由化·自律化	27
나. 産業의 效率性 提高	34
다. 監督體系	44
2. 開放化와 國際化 現況 및 改善方案	49
가. 開放化 現況	49
나. 우리나라의 保險市場 開放政策	51
다. 向後 保險市場開放 推進計劃	54
라. 市場開放에 따른 問題點 및 改善方案	55
마. 國際化	57

表目次 및 圖目次

〈表 1〉 世界各國의 保險産業 現況〈1992年度 基準〉	3
〈表 2〉 世界各國의 一人當 保險料 支出 現況〈1992年度 基準〉	4
〈表 3〉 世界各國險産業 比重 現況〈1992年度 基準〉	5
〈表 4〉 損害保險 種目別 原受保險料 占有率	7
〈表 5〉 損害保險 種目別 損害率 및 事業比率 現況	8
〈表 6〉 資産種類別 構成比 現況〈1993事業年度末 基準〉	10
〈表 7〉 損害保險社 收益性 變動推移	11
〈表 8〉 損保社 種目別 保險營業收益 現況〈1993事業年度末 基準〉	11
〈表 9〉 募集形態別 原受保險料 引受現況〈1993年 基準〉	12
〈表 10〉 募集形態別 保險種目別 原受保險料 引受現況〈1993年 基準〉	13
〈表 11〉 外國 損害保險社의 保險營業實績	13
〈表 12〉 外國損保社의 保險種目別 原受保險料 引受推移	14
〈表 13〉 外國損害保險社의 營業收益 變動推移	14
〈表 14〉 國內保險社의 海外保險營業 實績推移	15
〈表 15〉 國內損保社의 種目別 海外營業 實績現況〈1993年 基準〉	15
〈表 16〉 生命保險市場의 販賣商品構造〈1992事業年度末 基準〉	16
〈表 17〉 生命保險商品中 貯蓄性 商品比重 變化推移	16
〈表 18〉 年度別 效力喪失·解約率 推移	17
〈表 19〉 生命保險會社 現況	17
〈表 20〉 生命保險會社의 資産種類別 構成比〈1993事業年度末 基準〉	17
〈表 21〉 生命保險會社의 資産運用收益率 推移	18
〈表 22〉 外國社들의 資産種類別 構成比〈1993事業年度末〉	18
〈表 23〉 損害保險 募集形態別 人員 및 保險料 現況	22
〈表 24〉 募集人의 導入 및 脫落 現況	23
〈表 25〉 募集人의 1年 以上 勤務比率	23
〈表 26〉 保險保證基金의 現況〈1992事業年度末 基準〉	24
〈表 27〉 保險預託金 現況〈1992事業年度末 基準〉	25
(表 28) 一般物件과 特定物件의 損害率 比較	28
〈表 29〉 自動車保險 赤字 中 不良物件의 比重	29

<表 30> 募集形態別 人員 및 保險料 現況	39
<表 31> 募集人 新規登錄 및 脫落現況	39
<表 32> 募集人 給付期間에 따른 分類<1991年 基準>	40
<表 33> 代理店 新規許可 및 登錄現況	40
<表 34> 代理店 經歷期間에 따른 分類<1991年 基準>	40
<表 35> 우리나라 및 日本의 實效解約率	42
<表 36> 募集人の 導入 및 脫落現況	42
<表 37> 募集人の 1年 以上 勤務比率	42
<表 38> 外國保險會社 國內市場 進出現況	50
<表 39> 外國保險社의 國內進出 現況	52
<表 40> 國內進出 外國保險社의 不動產 取得基準	52
<表 41> 保險分野別 國境間 保險契約에 관한 規程	53
<表 42> 國境間 保險契約 開放化 日程	54
<表 43> 再保險 自由化 日程	54
<表 44> 保險代理店 制度의 自由化 日程	55
[圖 1] 國民總生産中 保險産業別 成長率 變化推移	1
[圖 2] 國民總生産中 保險産業의 比重 變化推移	2
[圖 3] 損害保險 및 生命保險 産業의 成長率 推移	6
[圖 4] 損保社의 損害率, 純事業比率 및 合算比率 變動推移	9
[圖 5] 損保社의 運用資産 收益率 變動推移	9
[圖 6] 保險監督 機構圖	19

I. 우리나라의 保險市場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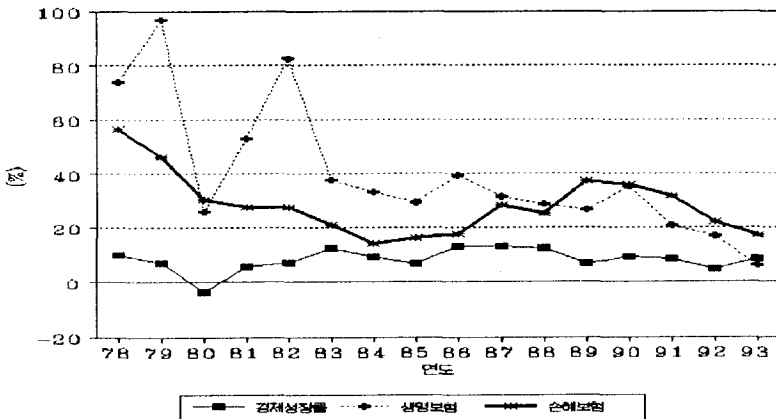
1. 市場規模

가. 收入保險料

1993 事業年度(1993년 4월 1일~1994년 3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의 保險産業 전체의 收入保險料는 30兆 8,337億원으로 前年度에 비하여 8.5% 성장한 것이다. 이중 生命保險産業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4兆 534億원으로 전체수입보험규모의 78%를 차지하며, 損害保險産業의 수입보험료는 6兆 7,804億원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保險産業은 국가경제의 빠른 성장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資本을 調達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활용되는 등 지원책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을 하여 온 것이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의 最近 15年동안 保險産業은 年平均 32.1%의 成長率을 보임으로써 同期間의 年平均 經濟成長率 8.2%를 훨씬 상회하였다. 생명보험 산업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생명보험산업은 이 기간중 연평균 37.5%에 이르는 성장을 하였다([圖 1] 참조).

[圖 1] 國民總生産中 保險産業別 成長率 變化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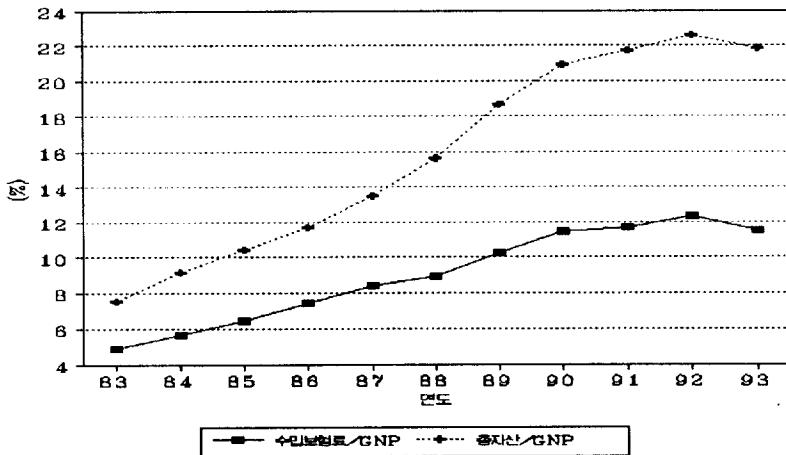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3.

나. 總資産

1994년 3월 말 현재 保險産業의 總資産規模는 58兆 1,733億원으로 GNP대비 22.1%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保險産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중 生命 保險産業의 자산규모는 50兆 2,002億원으로 전체의 86.3%이며, 損害保險産業의 자산 규모는 7兆 9,730億원으로 전체의 13.7%이다. 수입보험료의 높은 성장속도와 보험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영에 힘입어 전체 保險社의 總資産은 지난 10년동안 수입보험료의 26.1% 보다도 높은 28.8%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保險産業이 國家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수입보험료/GNP 및 총자산/GNP)은 지난 10년동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收入保險料는 1983년의 GNP대비 4.92%의 비중에서 1993년에는 GNP대비 11.57%로 높아졌으며, 總資産은 1983년의 GNP대비 7.54% 비중에서 1993년에는 GNP대비 21.83%로 높아졌다(〔圖 2〕 참조).

[圖 2] 國民總生産中 保險産業의 比重 變化推移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3.

다. 世界保險市場에서 韓國保險產業의 位置

1) 市場規模

우리나라는 1992 事業年度 末 收入保險料 總額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세계 6위의 保險產業國의 位상을 점하고 있으며, 生命保險產業이 세계 6위이고 損害保險產業의 경우는 세계 12위에 위치하고 있다(<表 1> 참조).

<表 1> 世界各國의 保險產業 現況(1992年度 基準)

(單位: 百萬달러)

國家名	收入保險料					
	全體保險產業		損害保險產業		生命保險產業	
	金額	順位	金額	順位	金額	順位
미국	522,468	1	305,955	1	216,513	2
일본	320,143	2	83,701	2	236,422	1
독일	107,403	3	65,105	3	42,298	5
영국	102,360	4	36,270	5	66,090	3
프랑스	84,303	5	36,622	4	47,681	4
한국	36,050	6	7,332	12	28,718	6
캐나다	34,424	7	18,267	7	16,157	7
이탈리아	30,834	8	22,330	6	8,504	12
네덜란드	26,043	9	12,178	9	13,865	8
스페인	20,800	10	13,735	8	7,065	13
스위스	20,169	11	8,492	11	11,677	9
호주	19,640	12	9,096	10	10,544	11
남아프리카공화국	13,752	13	2,765	24	10,987	10
스웨덴	11,426	14	5,633	15	5,793	15
벨기에	10,594	15	7,031	13	3,562	17
대만	9,886	16	3,087	21	6,799	14
오스트리아	9,026	17	6,272	14	2,754	20
덴마크	6,535	18	3,459	17	3,076	18
브라질	6,107	19	5,374	16	733	32
필란드	5,998	20	2,083	26	3,915	16
노르웨이	5,571	21	3,222	18	2,349	22
멕시코	4,883	22	3,216	19	1,667	23
인도	4,496	23	1,447	30	3,049	19
아일랜드	4,357	24	1,867	28	2,490	21
중국	4,139	25	2,882	23	1,257	24

資料: Swiss Re., Sigma, 1994.

2) 一人當 保險料 支出

國家別 人口數를 고려하여, 國民一人當 保險料支出 規模를 비교하면 1992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8위에 위치하고 있다(<表 2> 참조). 國民一人當 生命保險料 支出金額은 \$657.8로써 세계 11위이고, 損害保險料 支出金額은 \$167.9로써 18위에 위치하고 있다.

<表 2> 世界各國의 一人當 保險料 支出 現況(1992年度 基準)

(單位: \$)

國家名	保險料合計		損害保險		生命保險	
	金額	順位	金額	順位	金額	順位
스위스	2,923.1	1	1,230.8	1	1,692.3	2
일본	2,576.2	2	673.5	10	1,902.6	1
미국	2,067.6	3	1,210.8	2	856.8	6
룩셈부르크	1,934.5	4	858.3	3	1,076.3	4
영국	1,769.4	5	627.0	15	1,142.4	3
네덜란드	1,715.6	6	802.2	5	913.4	5
프랑스	1,469.5	7	638.4	14	831.1	7
독일	1,329.2	8	805.8	4	523.5	16
스웨덴	1,316.4	9	649.0	13	667.4	10
노르웨이	1,298.6	10	751.1	8	547.6	15
덴마크	1,264.0	11	669.1	11	595.0	13
캐나다	1,254.5	12	665.7	12	588.8	14
아일랜드	1,227.3	13	526.0	16	701.3	9
필란드	1,190.1	14	413.2	19	776.9	8
오스트리아	1,145.4	15	796.0	6	349.4	19
호주	1,120.4	16	518.9	17	601.5	12
벨기에	1,059.4	17	703.1	9	356.2	18
한국	825.7	18	167.9	26	657.8	11
아이슬란드	797.0	19	773.1	9	23.9	32
뉴질랜드	752.1	20	436.0	18	316.2	21

資料: Swiss Re., Sigma, 1994

3) 保險產業의 重要性

國家別로 그 나라 경제에서 保險產業이 차지하는 比重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992 事業年度 末 현재 收入保險料가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2.3%로 세계 2위에 위치하고 있다(<表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生命保險產業의 比重(9.8%, 세계 2위)이 높는데 기인하며 損害保險產業의 比重(2.5%, 세계 24위)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表 3> 世界各國險產業 比重 現況(1992年度 基準)

(單位: %)

國家名	保險料合計		損害保險		生命保險	
	比重	順位	比重	順位	比重	順位
남아프리카공화국	12.8	1	2.6	22	10.3	1
한국	12.3	2	2.5	24	9.8	2
영국	11.4	3	4.0	2	7.3	3
아일랜드	9.1	4	3.9	3	5.2	5
미국	8.7	5	5.1	1	3.6	12
스위스	8.6	6	3.6	7	5.0	6
일본	8.6	7	2.2	27	6.3	4
네덜란드	8.4	8	3.9	4	4.5	7
룩셈부르크	7.9	9	3.5	9	4.4	8
호주	7.2	10	3.3	16	3.9	10
프랑스	6.6	11	2.9	18	3.8	11
필란드	6.6	12	2.3	25	4.3	9
뉴질랜드	6.5	13	3.7	6	2.7	17
캐나다	6.4	14	3.4	12	3.0	14
독일	5.7	15	3.5	10	2.3	18
스웨덴	5.6	16	2.8	19	2.8	16
이스라엘	5.6	17	3.6	8	2.0	22
노르웨이	5.5	18	3.2	17	2.3	19
오스트리아	5.0	19	3.5	11	1.5	27
벨기에	5.0	20	3.3	14	1.7	24

註: 「比重」은 國民總生産 中 各産業別 收入保險料 總額이 차지하는 比重을 나타냄.
 資料: Swiss Re., *Sigma*,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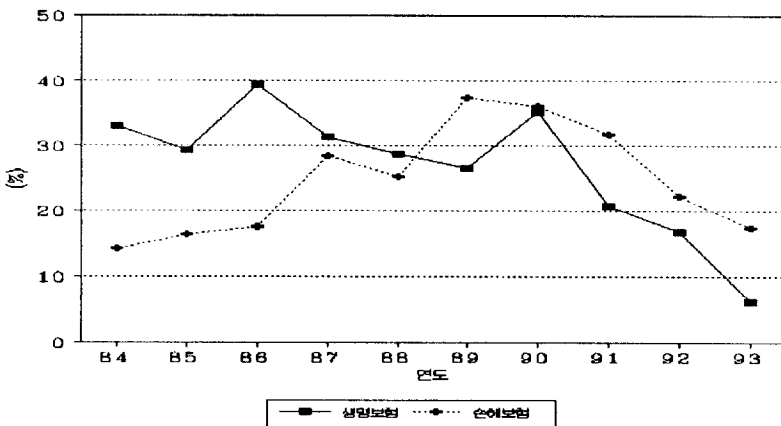
2. 保險産業別 市場構造

가. 損害保險産業

1) 市場規模 및 成長率

우리나라 損害保險業界는 1993 事業年度 末 기준으로 原受保險料가 6兆 7,804億원을 기록하여 前年度에 비해 17.3%의 성장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生命保險産業의 成長率이 항상 損害保險産業의 成長率보다 높았으나, 이러한 경향은 1989년부터 反轉되어 1993 사업연도까지 손해보험의 성장률이 생명보험의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圖 3] 참조).

[圖 3] 損害保險 및 生命保險 産業의 成長率 推移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84-1993.

2) 保險種目別 營業規模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은 6개의 保險種目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1993 事業年度

末 原受保險料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이 전체의 48.4%를 점유하고 있으며 장기(29.4%), 保證(6.8%), 특종(5.5%), 해상(5.3%), 화재(4.6%)의 순으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表 4> 참조).

<表 4> 損害保險 種目別 原受保險料 占有率

(單位: 億원, %)

구 분	1992년도		1993년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동차	27,459	47.5	32,814	48.4
장 기	17,293	29.9	19,908	29.4
보 증	3,769	6.5	4,600	6.8
특 종	3,177	5.5	3,755	5.5
해 상	3,191	5.5	3,598	5.3
화 재	2,918	5.0	3,129	4.6
합 계	57,807	100.0	67,804	100.0

資料: 보험감독원, 『1993년도 보험통계연감』.

3) 保險營業 現況

損害保險社들의 保險營業收益은 주로 合算比率로 평가하는데 합산비율은 損害率 (손해액(보험금지급액)/수익보험료)과 純事業比率(순사업비/수입보험료)의 합계로 나타난다. 合算比率이 100%를 넘으면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액수보다 보험금 지급이나 이에 따른 경비로 지출한 액수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므로 합산비율이 100을 넘는 경우 保險社는 保險營業收益面에서는 損失을 기록하게 된다. 保險營業損失이 곧 損害保險社의 赤字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保險料를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投資收益까지를 고려하여야 전체 運用收益이나 赤字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投資收益率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합산비율로

전체적인 運營收益을 가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의 특징은 保險種目別로 損害率과 事業比率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어느 特定 保險種目的 利益으로 他種目的 損失을 補填하는(subsidization) 현상이 뚜렷하다(<表 5> 참조).

<表 5> 損害保險 種目別 損害率 및 事業比率 現況

(單位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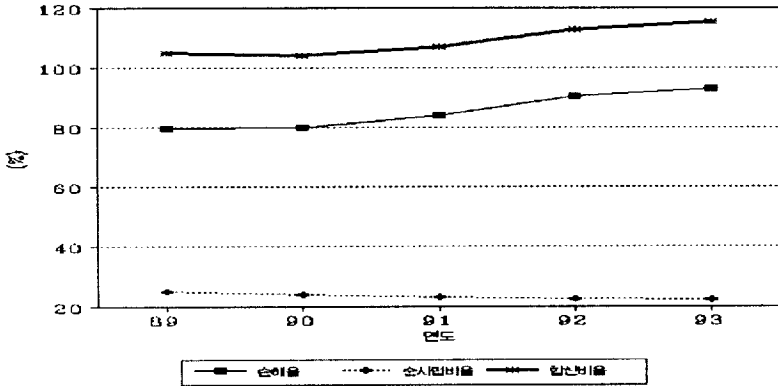
보험종목	자동차	장기	보증	특종	해상	화재	합계
손해율	103.8	91.2	101.1	58.1	33.6	47.9	92.9
사업비율	21.4	19.2	19.2	27.4	29.4	48.7	22.2
합산비율	125.2	110.4	120.3	85.5	63.0	96.6	115.7

資料: 보험감독원, 『1993년도 보험통계연감』.

1993 事業年度 末 기준으로 損害率은 해상보험의 33.6%부터 자동차보험의 103.8%까지 심한 격차가 있으며, 純事業比率도 장기보험이나 보증보험의 19.2%부터 화재보험의 48.7%까지 큰 폭의 격차가 있다. 이에 따라 合算比率은 해상보험의 63.0%부터 자동차보험의 125.2%까지 保險種目別로 격차가 심했으며, 産業全體平均은 손해율이 92.9%, 사업비율 22.0%로 합산비율이 115.7%를 기록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폭의 保險營業赤字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동안의 우리나라 損害保險産業 平均損害率 및 事業比率 變動推移에 따르면, 損害率은 近年에 이룰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損害率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圖 4 참조). 損害率의 증가추세는 全産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純事業比率은 損保社들의 경비절감노력을 위한 경영합리화 등이 정착되어 가는 결과라 판단된다. 손해율의 증가폭이 순사업비율의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에 合算比率은 근년에 이룰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圖 4 참조).

[圖 4] 損保社의 損害率, 純事業比率 및 合算比率 變動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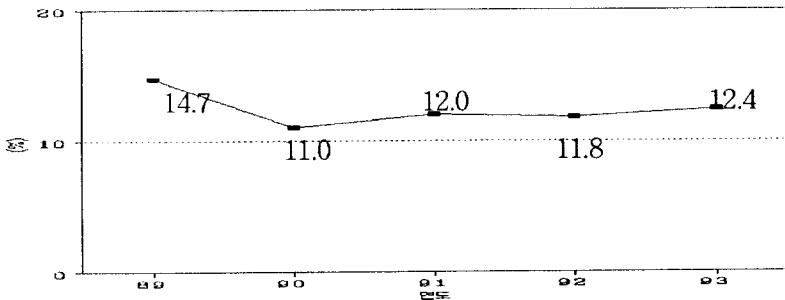


資料: 보험감독원, 『1993년도 보험통계연감』.

4) 投資營業 現況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損害保險社의 運用收益은 營業收益과 投資收益의 합으로 나타내므로 투자수익의 규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3 事業年度의 損保社 總投資收益은 7,038億원으로 12.4%의 運用資産對比 收益率을 기록하였다. 이는 前年度의 11.8%보다 0.6% 증가한 것이며, 1990년대에 이르러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것이다([圖 5] 참조).

[圖 5] 損保社의 運用資産 收益率 變動推移



資料: 보험감독원, 『1993년도 보험통계연감』.

5) 資産規模別 및 資産種類別 構成比

損害保險社들의 總資産은 7兆 9,730億원이고, 1993年度 기준으로 運用資産은 6兆 5,274億원으로 資産運用率이 81.9%를 나타냄으로써 前年度보다 0.9% 상승한 資産運用率을 기록했다. 1993년도 기준으로 損保社들의 資産種類別 占有率에 따르면 有價證券과 現·預金の 비중이 각각 34.1%와 20.3%를 기록하여 他種類의 資産에 비해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6> 참조). 運用資産 種類別 構成比의 變動推移에 따르면 近年에 이르러 有價證券과 貸出金の 비중이 감소하고, 반면에 現·預金과 不動産의 보유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表 6> 資産種類別 構成比 現況<1993사업연도말 기준>

(單位: 億 원,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현 · 예금	16,154	20.3
유가 증권	27,208	34.1
대출 금	13,909	17.4
부 동 산	8,004	10.0
기 타	14,567	18.2

資料: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1993.

6) 國內損保社들의 運用收益 變動推移

1993 事業年度 末 기준으로 우리나라 損保社들은 總 1,814億원의 當期純損失을 기록함으로써 3년 연속 損失을 기록하게 되었다(<表 7> 참조). 當期純利益(損失)은 該當年度の 保險營業利益(損失)과 資産運用收益을 合算한 후 기타소득과 경비를 제하고 법인세 차감후의 純利益(損失)을 의미한다.

<表 7> 損害保險社 収益性 變動推移

(單位：億圓)

구 분	보험영업수익	자산운용수익	당기순이익
1989	△ 2,374	3,540	674
1990	△ 2,506	3,636	447
1991	△ 4,197	4,897	△ 95
1992	△ 7,307	5,691	△ 1,506
1993	△ 9,312	7,038	△ 1,814

資料：보험감독원, 『1993년도 보험통계연감』.

이상과 같은 損保社들의 損失은 자동차보험으로부터의 保險營業損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自動車 保險料率의 現實化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國內損保社들의 損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表 8> 참조). 長期保險의 경우에도 1993년도에 1,960億의 損失을 기록했으나 자동차보험에 비하여 손실규모도 작고 장기보험으로부터 수입된 보험료는 타종목으로부터의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유·투자할 수 있어서 投資收益으로 保險營業의 損失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保有 保險料를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서 保險營業損失이 損保社 損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表 8> 損保社 種目別 保險營業收益 現況<1993사업연도말 기준>

(單位：億圓)

화 재	해 상	자동차	보 증	특 종	장 기
19	763	△ 8,061	△ 879	352	△ 1,960

資料：보험감독원, 『1993년도 보험통계연감』.

7) 販賣組織

우리나라 損害保險商品의 販賣組織은 會社募集, 募集人, 代理店 및 共同引受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募集形態別 原受保險料 引受現況에 따르면, 內國社와 外國社間에 다소 차이가 있다. 保證保險社와 再保險社를 제외한 一般 損害保險 內國社들은 대리점을 통한 인수가 52.9%로 가장 높고, 外國社의 경우에는 대리점의 비중이 전체의 82.3%로 대리점 의존도가 內國社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9> 참조). 募集人을 통한 모집은 內國社의 경우 전체의 29.5%를 점유하고 있으나 外國社의 경우에는 8.8%를 점유하여, 內國社가 外國社에 비하여 모집인 활용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表 9> 募集形態別 原受保險料 引受現況<1993년 기준>

(單位: %)

구 분	회사모집	모집인	대리점	공동인수
내국사	9.5	29.5	52.9	8.1
외국사	3.6	8.8	82.3	5.3

資料 :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1993.

損害保險의 保險種目別로 募集形態別 引受現況을 분석하면, 保險種目에 따라 보험 상품판매를 의존하는 모집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火災保險의 경우에는 代理店의 의존도가 가장 높지만(62.5%), 海上保險의 경우에는 보험물건의 크기 때문에 대리점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 會社募集(98.5%)을 활용하고 있으며 自動車保險의 경우에는 代理店(58.4%)과 募集人(26.9%)을 통한 보험모집이 대부분이며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特定物件은 업계가 공동인수하고 있다. 또한 保證保險은 모집인이나 공동인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주로 會社募集(62.6%)과 代理店(37.4%)을 활용하고 있으나, 長期保險의 경우에는 회사모집(0.2%)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特種保險은 會社募集(46.4%)과 代理店(48.2%)을 주로 활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10> 참조).

<表 10> 募集形態別 保險種目別 原受保險料 引受現況<1993년 기준>

(單位: %)

구 분	회사모집	모 집 인	대 리 점	공동인수
화 재	24.5	5.5	62.5	7.5
해 상	98.5	0.0	0.8	0.7
자동차	0.1	26.9	58.4	14.6
보 증	62.6	0.0	37.4	0.0
특 종	46.4	3.0	48.2	2.4
장 기	0.2	47.7	52.1	0.0

資料: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1993.

8) 外國社의 國內營業 現況

1993 事業年度 現在 國內에 支店의 형태로 진출하여 營業하고 있는 外國 損害保險 會社는 AHA, CIGNA 및 VIGILANT 등 3個社이다. 外國3社는 火災, 海上, 自動車, 特種保險 등의 保險종목에 대해 內外國人을 대상으로 營業을 하는데, 1993 사업연도에 收入한 原受保險料는 289億원으로 전체 保險산업의 원수보험료 중 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前年度 점유율 0.5%보다 0.1%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外國社의 國內市場占有率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表 11> 참조). 外國社의 平均 損害率은 49.2%로 國內社의 損害率 平均 93.1%에 비하여 훨씬 양호한 상태이나, 平均 純事業比率이 59.2%로 國內社 平均 22.1%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해마다 순사업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表 11> 참조). 따라서 外國社는 사업비의 절감이 있어야만 國內營業에서 善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表 11> 外國 損害保險社의 保險營業實績

(單位: 億원, %)

구 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손 해 율	순사업비율
1989	247	0.9	42.3	47.6
1990	308	0.9	54.7	48.6
1991	292	0.6	59.3	48.7
1992	279	0.5	51.8	56.1
1993	289	0.4	49.2	59.2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89~1993.

9) 外國社의 保險營業種目 特性

外國損保社가 營業하고 있는 保險種目 중 특히 特種保險은 外國사가 전통적으로 많이 處證하고 있는 보험종목이므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外國사의 保險종목별 營業활동 變動추이에 따르면 海上保險의 비중과 特種保險의 비중이 증가추세인 데 반하여, 火災保險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表 12> 참조).

<表 12> 外國損保社의 保險種目別 原受保險料 引受推移

(單位: %)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합계
1989	34.9	5.4	16.9	42.8	100
1990	30.4	4.9	26.9	37.8	100
1991	30.7	5.4	23.6	40.3	100
1992	25.3	6.3	22.7	45.7	100
1993	13.9	8.2	23.5	54.4	100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89~1993.

10) 外國社의 運用收益 變動推移

外國損害保險社의 保險營業收益과 投資收益 分析에 따르면, 前年度까지는 投資收益이 保險營業損失보다 많았기 때문에 運用收益(operating result)은 항상 純利益을 기록했으나, 1993 事業年度에는 반대로 保險營業損失이 投資收益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損失을 기록하였다(<表 13> 참조).

<表 13> 外國損害保險社의 營業收益 變動推移

(單位: 百萬元)

구분	보험영업수익	투자수익	전체운용수익
1989	526	2,457	3,283
1990	△ 2,718	3,450	732
1991	△ 1,982	3,772	1,790
1992	△ 1,749	4,073	2,324
1993	△ 3,408	3,000	△ 408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89~1993.

11) 國內保險社의 海外營業 現況

國內損害保險會社의 海外 保險營業活動 實績에 따르면 1993年度에 339億원의 原受 保險料를 收入하여 國內營業의 0.49% 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海外 營業은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表 14> 참조).

<表 14> 國內保險社의 海外保險營業 實績推移

(單位: 億원)

구 분	1989	1990	1990	1992	1993
금액증가율	69	116	190	249	339

資料: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1993.

國內損保社의 海外營業을 保險種目別로 살펴보면 특종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의 순으로 나타났다(<表 15> 참조). 또한 地域別로는 미국(170億원), 일본(96億원), 괌(73億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15> 國內損保社의 種目別 海外營業 實績現況<1993년 기준>

(單位: 億원, %)

구 분	특 종	해 상	화 재	자 동 차	보 증	합 계
금 액	115	108	62	45	8	339
구성비	33.9	31.9	18.4	13.4	2.8	100

資料: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1993.

나. 生命保險產業

1) 市場規模 및 特性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의 特徵은 商品構成에 있어 貯蓄性商品의 比重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1992 事業年度 末 기준으로 전체 收入保險料 中 저축성상품의 수입

보험료는 21兆 1,800億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하고 있다(<表 16> 참조). 그러나 1993 사업연도에는 貯蓄商品의 收入保險料 增加率이 保障性商品의 增加率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 전체의 90.6%로 떨어졌다. 이러한 貯蓄性商品 比重의 減少趨勢는 최근 5년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된 현상이다(<表 17> 참조). 이는 생명보험의 기본기능인 사망에 대비한 保障性保險의 重要性이 해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表 16> 生命保險市場의 販賣商品構造
(1992 事業年度 末 基準)

(單位: 億원, %)

연도	구분	저축성상품	보장성상품	계
1992	수입보험료 (비 중)	211,800 (93.5)	14,613 (6.5)	226,413 (100.0)
1993	수입보험료 (비 중)	217,857 (90.6)	22,677 (9.4)	240,534 (100.0)

資料: 재무부 보험국

<表 17> 生命保險商品中 貯蓄性 商品比重 變化推移

(單位: %)

구분 \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저축성상품비중	97.0	96.7	95.6	93.5	90.6
보장성상품비중	3.0	3.3	4.4	6.5	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우리나라 生保市場의 또 다른 특징은 效力喪失이나 解約되는 계약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解約率은 27%~32.5%까지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989년에 하락했던 效力喪失·解約율이 근년도에 이르러 다시 증가했으나 1993년도에는 다소 하락하고 있다(<表 18> 참조).

<表 18> 年度別 效力喪失·解約率 推移

(單位: %)

년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해약율	27.0	29.2	29.0	32.5	30.2%

資料: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1993.

우리나라의 生命保險會社數는 1987년의 시장개방 이전에 설립된 6개의 既存社와 1987년 이후에 설립된 27개사 등 총 33개사이다. 1987년 이후에 설립된 27개사는 6개의 全國規模 新設社, 9개의 地方社, 7개의 外國社와 國內社間의 合作社, 5개의 外國社로 대별할 수 있다(<表 19> 참조).

<表 19> 生命保險會社 現況

(單位: 개)

구 분	기존사	신설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합계
회사수	6	6	9	7	5	33

資料: 생명보험협회, 월간『生協』, 1994. 8.

2) 總資産規模 및 資産種類別 構成比

1993 事業年度 기준으로 우리나라 生命保險社들의 總資産은 50兆 2,002億원이고, 그 중 運用資産은 46兆 7,617億원으로 93.2%의 資産運用率을 보이고 있다. 資産種類別 運用現況을 살펴보면, 대출금이 48.7%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가증권 27.0%, 현예금 9.9%, 부동산 7.5%, 기타자산 6.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表 20> 참조).

<表 20> 生命保險會社의 資産種類別 構成比<1993사업연도말 기준>

(單位: 億원, %)

자산종류	대출금	유가증권	현·예금	부동산	기 타	합 계
금 액	244,510	135,496	49,793	37,818	34,385	502,002
구성비	48.7	27.0	9.9	7.5	6.8	100

資料: 보험감독원, 『1993년도 보험통계연감』.

1993년도의 資産運用收益率은 총자산대비 10.8%이고, 운용자산대비 11.7%를 기록하였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資産運用收益率 推移에 따르면, 자산운용수익률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21> 참조).

<表 21> 生命保險會社の 資産運用收益率 推移

(單位: %)

연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운용자산수익률	13.5	12.9	12.7	12.7	11.7
총자산수익률	13.0	12.4	12.0	11.9	10.8

資料 :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1993.

3) 外國生保社の 營業活動 現況

1993 사업연도 중 5개 外國 生命保險會社の 營業實績에 따르면 收入保險料가 832億원으로 生保産業 전체수입보험료의 0.3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력상실 및 해약된 계약의 비중인 實效解約率은 28.3%를 기록하여 産業平均 30.2%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나 事業比率이 36.2%로 産業平均 15.0%의 두배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總資産規模는 1,513億원으로 산업전체의 0.31%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중 運用資産은 1,019億으로 資産運用率이 67.34%를 기록하여 산업평균 93.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外國社의 資産種類別 構成比도 산업전체의 구성비와 판이하게 달라, 現·預金の比重이 33.2%(산업평균 9.9%)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반면에 貸出金の比重은 7.1%(산업평균 48.7%)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表 22> 참조). 결과적으로 外國社들은 1993년도에 總 40億원의 損失을 기록하였다.

<表 22> 外國社들의 資産種類別 構成比<1993사업년도말>

(單位: %)

자산종류	대출금	유가증권	현·예금	부동산	기 타	합 계
비 중	7.1	27.1	33.2	0	3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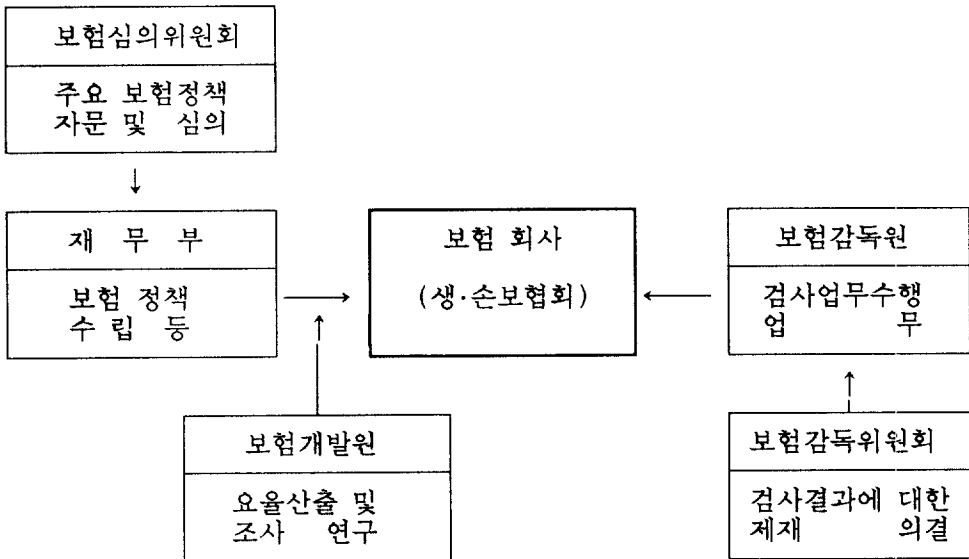
資料 : 보험감독원, 『1993년도 보험통계연감』.

II. 保險監督體系 및 保險制度

1. 保險監督體系

우리나라의 主要 保險監督機關은 財務部와 保險監督院이다. 財務部는 주로 事前的 監督을, 保險監督院은 事後的 監督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재무부장관 諮問機關으로 保險審議委員會를 두어 보험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料率算定 및 調査·研究를 담당하는 保險開發院 및 자율규제단체인 생·損保協會가 운영되고 있다 ([圖 6] 참조).

[圖 6] 保險監督 機構圖



가. 財務部

財務部는 주로 保險産業政策에 관한 法律과 規則 등을 制定하여 運用하고, 主要 保險政策의 수립 및 保險事業者에 대한 監督業務를 수행하는데, 주요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험사업자 및 보험관련단체의 인·허가
- 보험사업자 감독상 필요한 제반 규칙 및 「재산운용준칙」 등 guideline 설정
-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및 조치

財務部는 산하에 證券保險局을 두고 있으며 증권보험국내에는 생명보험과와 손해보험과 등 2개과가 있다.

나. 保險監督院

1988년에 保險業法에 의하여 설립된 保險監督院은 주로 保險加入者를 保護하고 保險社들의 公正한 業務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사를 감독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 보험사업자 및 보험관련 단체의 정기적인 심사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 보험보증기금의 운영과 관리
-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간의 보험분쟁의 조정
- 대리점허가, 점포설치,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관리 등 재무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보험정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재무부에 건의

保險監督院은 保險監督院長, 副院長, 3명의 副院長補가 재임중으로 保險監督院長은 재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副院長 및 副院長補는 보험감독원장의 추천으로 財務部將官이 任命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감독원에는 보험감독위원회,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 및 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는 7인 내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회에는 보험감독원장을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정부, 소비자 단체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다. 保險審議委員會

保險審議委員會는 재무부, 보험감독원, 학계, 언론계, 생·손보험회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한다. 보험정책에 관한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재무부장관은 보험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라. 其他機關

기타 保險監督과 관련된 기구로는 保險開發院과 生·損保協會가 있다. 保險開發院은 保險料率의 算定 및 保險制度의 調査·研究 등을 수행하는 보험전문기관으로서 보험감독당국의 보험정책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生·損保協會는 保險事業者들의 自律團體로서 보험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험사업자들간에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정한다.

2. 保險制度 및 運營

가. 保險業務領域과 料率體系

우리나라는 法律(保險業法)에 의해서 生命保險과 損害保險 事業의 兼營이 금지되어 있어 철저한 全業主義를 택하고 있다. 다만 第3分野 保險에 속하는 傷害, 疾病 등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가 판매할 수 있는데, 傷害保險의 경우에는 損保社가 主契約商品으로 판매하고 生保社는 特約契約商品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반하여 疾病保險의 경우에는 生保社가 定額報償을 원칙으로 하는 主契約商品으로 판매하고 損保社는 實損報償原則의 特約契約商品으로 판매할 수 있다.

保險商品과 保險料率에 대해서는 상품에 따라서 차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認可

의제제도를 도입하여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인가의제제도에 따른 인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申告不要의 경우는 他保險社가 인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복제판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販賣後 報告의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정하는 「保險商品管理規程」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후 保險監督院에 事後的으로 報告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申告後 販賣의 경우에는 販賣前에 財務部에 販賣를 申告하는 상품으로 세제·금리 및 업무영역 등과 관련되어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保險募集制度

1) 損害保險産業

損害保險 募集組織은 募集人, 代理店 및 本社直接募集으로 구성되어 있다(<表 23> 참조). 募集形態 中 募集人을 통한 모집형태에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된 모집인이 대다수로 3년 이하 경력자가 1992 事業年度 기준으로 82.1%를 차지하고 있다. 代理店이 損害保險모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1개 회사 전속대리점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1993년 4월부터는 2개 회사 전속의 複數代理店도 허용되었다. 本社直接募集의 모집형태는 해상보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경험이 필요한 보험상품의 판매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表 23> 損害保險 募集形態別 人員 및 保險料 現況
(1992 事業年度 末 基準)

(單位: 명, 億원, %)

구 분	본사직접	모집인	대리점	공동인수	계
인원수	21,082	72,196	33,077	-	126,355
구성비	16.7	57.1	26.2	-	100
보험료	7,497	13,559	32,414	4,337	57,807
구성비	13.0	23.4	56.1	7.5	100

資料: 재무부 보험국

2) 生命保險産業

우리나라의 生命保險商品의 경우에는 주로 女性募集人을 중심으로한 연고중심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新設社의 급증에 따라 모집인의 과당경쟁적인 스퀴트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募集人의 大量 신규등록·탈락 현상이 만연되어 있으며(<表 24> 참조), 한 保險社에 1년 이상 근무한 모집인의 비율은 매년 2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表 25> 참조).

<表 24> 募集人의 導入 및 脫落 現況

(單位: 천명)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도입	165	183	215	263	258
탈락	167	183	184	225	222

資料: 재무부 보험국

<表 25> 募集人의 1年 以上 勤務比率

(單位: %)

연도	1991	1992	1993. 10
비율	12.9	16.0	17.0

資料: 재무부 보험국

다. 保險資産의 運用

保險會社의 資金이 安定性·收益性·公共性의 3대 원칙에 의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資産運用에 대한 guideline인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재산운용준칙」에서 정한 保險社의 重要資産에 대한 保有限度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예금:
 - ┌ 생보사: 총 자산의 10% 이내
 - └ 손보사: 총 자산의 20% 이내
 - 주 식: 총 자산의 30% 이내
 - 부동산:
 - ┌ 업무시설용: 총 자산의 10% 이내
 - └ 투자사업용: 총 자산의 5% 이내
- (단, 외국보험사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라. 消費者 保護를 위한 制度的 裝置

1) 保險保證基金

保險保證基金은 보험회사의 파산이나 지급불능시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保險金을 비롯한 제지금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감독원내에 설치된 기금에 매년 가계성 수입보험료의 0.1%를 現金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表 26> 참조).

<表 26> 保險保證基金의 現況(1992 事業年度 末 基準)

(單位: 개, 億원)

구 분	출연기관수	출연금액	운용내역(장부가격)
생명보험	30	295	344
손해보험	13	64	74
계	43	359	418

資料 :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1992.

2) 保險契約者 保護預託金

保險契約者 保險預託金은 新設社의 경우 事業初期에 부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營業開始前에 보험감독원에 납입자본금의 일정규모

(30%)를 現金으로 預託하게 하고, 此後에 책임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는 등 그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返還해 주는 제도이다. 1993年 3月 末 현재 預託會社數는 28 個社이며 預託金額은 1,107億원으로 보험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다(<表 27> 참조).

<表 27> 保險預託金 現況(1992 事業年度 末 基準)

(單位: 개, 億원)

예탁회사	예탁금액	운용내역(장부가격)
28	776	1,107

資料: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1992.

3) 責任準備金

責任準備金은 보험회사가 每 決算期마다 계상하는 準備金으로서 이 준비금에 해당하는 재산은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4) 保險紛爭調整委員會

保險紛爭調整委員會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保險事業者와 保險加入者間에 발생하는 각종 紛爭調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보험감독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III. 保險產業의 國際化 方案

1995년에 출범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世界貿易機構) 體制下에서는, 종래 GATT체제에서 지향했던 공산품위주 국가간 교역확대에서 더 나아가 金融 등의 서비스業과 知的所有權까지의 國家間 交流가 매우 활발해 질 것이다. 따라서 國內 保險產業에 대한 開放化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는 1996년에 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經濟開發協力機構)에 加入할 계획으로,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 制度(특히, 金融·財政制度 등)를 開放化·國際化 方向으로 改編하고 있는 중이다. OECD의 保險委員會는 OECD의 重要 위원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今年 中으로 保險委員會에 オブザーバー(observer)로 加入할 예정이므로 이제 保險產業의 國際化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國際化 方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한 산업의 올바른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產業內部的 問題點을 改善하여 合理化시켜야만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國際化를 위한 前提條件으로 保險產業內部的 合理化方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보험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국내보험산업의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國際化方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國內產業의 合理化 方案

國內 保險產業의 合理化 方案을 세목별로 나누어 크게 세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改善方案에 대한 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保險產業의 運營에 대한 自由化·自律化에 관한 것으로 현재 「新경제 5個年計劃」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金融產業改編案 中 規制緩和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保險產業의 效率性提高에 관한 것으로 業務領域 調整과 業務 및 經營의 改善方案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룰 것이다. 끝으로 監督體系의 合理化方案으로 보다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위한 代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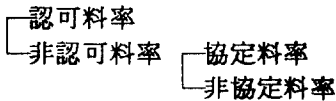
가. 自由化 · 自律化

1) 價格 自由化

보험산업에서의 價格이라 함은 보험상품에 대한 保險料(premium)라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保險料率體系의 改善을 통하여 價格制度의 改善이 가능하다.

가) 損害保險 料率體系

損害保險의 料率體系는 손해보험 종목에 따라서 다르며,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認可料率과 非認可料率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이 보험감독당국의 인가를 要하는 認可料率에 속하고 있다. 非認可料率은 다시 보험사 간에 정한 協定料率으로 운영되는 것과 非協定料率의 두가지가 있다.



현재 정부는 保險市場開放으로 인한 경쟁력강화 필요성에 의해서 保險料率自由化를 企業保險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4段階 保險商品價格自由化方案」을 마련하여 보험요율자유화의 영향이 적은 보험상품순으로 보험요율자유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問題點이 많은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특히 自動車保險料率은 損害率方式에 따라 정기적으로 料率調整이 이루어져야 하나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가 共同 引受하여 管理하고 있는 不良物件에 대한 보험료와 일반물건과의 보험료 차이가 없으므로 불량물건은 急增하는 趨勢이고 이는 自動車保險社의 累積赤字를 增加시키는 주된 要因이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발생된 누적적자로 인하여 손해보험산업의 料率構造가 상당히 歪曲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合理的인 調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交通事故率의 增加, 保險原價(노임단가, 수리비, 의료비)의 上昇에 반하여 保險料率의 適期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1983년 모든 손보사에게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래 自動車保險의 累積赤字는 1992년 12월까지 1兆4千億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누적적자의 根本原因은 매년 수지상황에 따라 10%범위내에서 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損害保險料率指針이 계속 시행되지 못한 것에 있으나 不良物件 取扱과 醫療費 體系의 矛盾 등에도 많은 원인이 있다. 1987年 4月부터 保險會社間에 체결한 「自動車保險 特定物件 共同引受 相互協定」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차종, 운전자 성향, 운행실태, 사고발생 개연성, 사고다발지역 등의 기준에 의하여서 危險物件으로 判定받아 보험인수를 거절당한 물건에 대해서 特定物件이라 하여 保險社 共同으로 引受하고 있다. 一般物件에 비해 危險率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保險料適用은 별도의 追加保險料 없이 一般物件과 同一하다. 그 결과로 特定物件의 損害率(보험지급액/보험료 수입)은 일반물건에 비해 훨씬 높은 상태이다(<表 28> 참조).

<表 28> 一般物件과 特定物件의 損害率 比較
(單位 : %)

구 분	일 반 물 건		특 정 물 건	
	구성비	손해율	구성비	손해율
1990	92.1	87.4	7.9	106.8
1991	86.4	90.5	13.6	121.7
1992.7	83.2	97.8	16.8	123.4

이로 인하여서 자동차보험사의 營業收支를 惡化시키는 것은 물론, 선의의 운전자들에게 保險料를 轉嫁(subsidization)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表 28>에 의하면 이러한 特定物件의 比重이 1989년 7월의 「特定物件에 대한 保險料 任意割増 制度」의 廢止 이후 더욱 增大되어 1992년 7월에는 전체물건 중 16.8%를 차지하므로써 그 심각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物量物件의 損害率 및 比重의 增加로 인해서 전체

自動車保險의 收支赤字 중 不良物件으로 인한 赤字의 比重이 增大되고 있다(<表 29> 참조).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고시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하여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自保患者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환자보다 2-2.5배의 높은 醫療酬價를 適用하며, 또 醫療機關의 種類에 따라서 의료수가가 서로 다른 모순도 존재하고 있다.

<表 29> 自動車保險 赤字 中 不良物件의 比重
(單位: 억원, %)

년도	전체적자	불량물건적자	<u>불량물건</u> 전체적자
1990	2,015	244	12.1%
1991	2,885	885	30.7%

料率算定時에 運轉者의 性向이나 車輛用途 등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地域別, 所有車의 車種別, 그리고 交通法規 違反實績 등의 유용한 差等料率算定の 基準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다. 현행 保險料率割増體系 중 사고차량에 대한 100-120%까지의 基本割増制외에 뺑소니 운전자나 음주운전자 등에 적용하는 追加割増制(10-100%)의 경우 그 對象이 매우 限定되어 있으므로 추가할증제의 實效성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수지적자를 타보험종목의 이윤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損害率이 良好한 他保險種目的 상대적으로 높은 保險料率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타보험종목 가입자의 이익도 침해하고 있어서 契約者間 保險料負擔의 衡平性에 심각한 問題가 있다.

현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料率自由化가 積荷保險 등의 영업실적이 우수한 種目에 局限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料率自由化에 따른 경쟁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種目的 이윤규모는 감소하는 데 반하여 자동차보험 등 慢性赤字 種目에는 要素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損保社 全體赤字幅은 증대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손해보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각 損害保險 種目에 대한 衡平性있는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料率政策이 絶실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自動車保險料率의 現實化를 통하여 損害保險社의 보험종목별 分離計定時 保險料率 인하가 가능한 他종목에서의 國際競爭力을 높일 수 있으며, 損害保險料率의 궁극적인 自律化措置를 취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89年 7月 이전에 실시되었던 「特定物件에 대한 保險料 任意割増制度」를 復活하고, 일반물건과 특정물건의 基本保險料를 差等化하여 우량계약자를 보호하고 불량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케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一般物件者の 危險率分類도 선진국수준으로 細分化하여서, 낮은 危險率의 善意의 運轉者에게는 保險料輕減의 혜택을 주고, 높은 위험률의 운전자(상습교통위반자 포함)에게는 보험요율을 인상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地域別과 所有車輛의 車種別 料率의 差等化를 적용하여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고 계약자간의 保險負擔의 衡平性을 이루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보험요율의 차등화로 인한 交通文化의 發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保險會社에게 이러한 취지의 保險料率算定の 自律權을 移讓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사고시의 대비책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醫療酬價의 早期告示制의 法制化를 추진하고 修理費도 事前算定後 告示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규격화된 견적가격을 알려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生命保險 料率體系

生命保險 料率算定の 기본적인 세가지 要素는 豫定死亡率, 豫定利率 및 豫定事業費率이다. 이러한 세가지 요소에 대한 現行의 運營狀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豫定死亡率 : 제 2 회 경험사용표임.
- 豫定利率 : 傳統型商品인 배당상품의 경우 년 7.5%를 적용하고, 無配當商品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년 9.5% 및 8.5%로 差等 적용함.
- 豫定事業費率 : 新契約費, 維持費, 收金費로 나누어서 각 보험종류 및 기간에 따라 세분화한 후 각각의 항목에 따라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액수에 제한이 있으며 아울러 事業費總額에도 제한이 있음.

이상의 요율산정의 기본적인 세가지 요소 외에 事後的인 요소로 配當率에 있는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배당율의 종류에는 확정배당, 이차배당 및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다.

生命保險産業의 現行 料率體系는 상품의 계약기간에 따른 豫定利率의 差等化가 시행되지 않아, 장기상품보다 短期商品에 高金利를 適用하는 矛盾이 발생되고, 고정된 豫定利率의 적용으로 인하여 金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豫定事業費率의 경우 商品別 豫定事業費 부과에 있어 合理的인 原價分析의 缺如로 인하여 商品別 事業費賦課에 不公平性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現行 配當率은 각 종류의 배당율이 劃一的으로 결정되어서 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자의 이해가 반영되지 못하므로 公平性의 문제가 있으며, 配當例示制度의 실시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계약자들의 배당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상품의 계약기간에 따른 豫定利率의 差等適用으로 장기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생명보험의 본래 기능인 保障性商品을 비롯한 消費者의 口味에 맞는 商品의 開發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자유화가 상당수준 진척되었으므로 金利變化에 따라 豫定利率도 변하는 金利連動型商品 開發을 허용하여 生保産業의 安全的發展 도모하고, 상품의 契約期間에 따른 差等化된 事業費를 합리적으로 算出하여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財務狀態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配當制度는 계약자 配當例示 許容을 검토하고 二次配當制度의 單純化를 이루어 계약자의 배당율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新設社의 경우, 營業開始費用이 많이 소요되는 상태에서 事業費算出에는 最大限度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慢性的인 累積赤字를 보이고 있다. 新設社들은 營業開始費用을 사업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事業費限度를 增額하거나 회사의 自律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新設社의 주장은 나름대로 심각히 고려해 볼 사항이나 보험상품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營業開始費用이 보험상품 구입에 直接的으로 發生한 經費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生命保險의 料率自由化는 보험회사의 經營自律性을 提高시키며 保險社간의 競爭을 촉진하여 市場競爭原理에 따른 消費者의 利益增大를 이룰 수도 있으나, 全面的인 自律化를 일시에 실시할 時에 각 보험사의 재무상태

및 인적자원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混亂을 야기할 수 있고 보험사간 과당경쟁에 따라서 재무상태가 불안한 新設社들의 經營基盤을 威脅할 수 있으므로 施行에 따른 신중한 對策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内部 經營 및 資金의 調達 運用의 自律化

가) 資金調達에 관한 規制

보험회사의 資金調達方法은 현재 매우 制限되어 있다. 새로운 財源의 확보방법은 收入保險料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재무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外部資金의 借入이 不可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一時的인 資金不足時 또는 流動性確保가 必要한 경우 은행의 當座借越에만 依存하고 있는 실정이다.

資金調達方法의 制限으로 일시부족금 발생시와 지불상태의 급증으로 인한 필요자금 급증시 保有債券의 低價賣却 등을 통해야 하므로 資産의 效率的인 管理가 困難한 측면이 있다. 특히, 단기자금조달 수단이 허용되지 않아 과다한 流動性資産의 保有로 인하여 資産運用의 效率性 및 收益性이 低下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豫想外 資金需要 發生時 또는 流動性 確保가 必要한 경우에 調達할 수 있는 몇가지 方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流動性을 확보하기 위해 短期貯蓄性商品의 販賣에 치중하고 있고, 단기상품의 계약마감일에는 유동성의 문제가 다시 생기는 등의 전형적인 현재의 生保業界 資金運用의 惡循環을 改善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할 만한 短期借入의 手段으로는 은행으로부터의 當座借越외에 換買條件附債券(RP)의 賣渡와 call money의 허용 등이라 판단된다.

나) 資産 運用營에 관한 規制

生保社 資産運用의 公共性을 고려, positive方式(열거한 사항에만 투자가능)으로 현재 엄격히 規制하고 있다. 保險社의 貸出金利는 재무부에서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각

종 貸出의 內容(중소기업, 제조업 및 주택건설을 위한 投融資等)을 명시하여 대상별로 지도비율을 설정, 同一人의 株式이나 債券의 所有·擔保의 上限線(10%)설정, 債券投資 義務比率(20%)을 설정, 非上場 有價證券의 取得 또는 擔保禁止, 外貨證券에의 投資限度 설정(2%)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엄격한 資産運用規制의 問題點으로는 회사 資産運用의 效率性和 收益性 차원에서 자산운용에 차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資産運用指針에 있어서도 회사마다 다른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회사를 劃一的으로 規制하고 있다는 것이며, 現행의 positive 방식하에서는 先物 등의 新種 投資對象에 대한 對應이 不可能한 상태라는 것이다.

生保社의 資産運用의 公共性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規制를 하는 原則은 지켜져야 하나,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加入者保護 차원에서 미래의 보험금지급 등 보험가입으로 인한 각종수혜를 원활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生保社의 資産 收益性을 考慮한 規制가 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예와 같이 資産과 負債의 철저한 均衡維持(matching)를 기준으로 하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에는 자율성을 많이 주고 균형을 이루지 못한 회사는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망되는 실정이다. 각종 貸出義務比率과 株式·債券의 投資比率 등에 대한 上限線 또는 下限線을 段階적으로 擴大하여 收益性提高 차원에서 資産運用의 自律性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negative system(열거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투자가능)으로의 漸進的인 轉換을 하여 保險會社의 自律性을 擴大시켜 資産運用의 多樣性 및 效率性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自律性의 擴大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保險加入者 保護制度의 보강으로, 자산운용의 위험증가에 따른 문제점의 사전대비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保險社 資産運用을 감독하기 위한 專門人力의 確保와 制度의 整備가 선진국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산업의 올바른 합리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産業의 效率性 提高

1) 業務領域調整

가) 生·損保間 業務領域調整

(1) 第3分野(傷害, 疾病, 看病)의 業務調整

第3分野 保險이라 함은 법규상 명확한 損·生保業務領域 規定이 없어서 損·生保社들간의 業務領域다툼이 치열한 保險種目を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제3분야 보험에 속하는 보험종목은 傷害, 疾病, 看病保險이다. 현재, 傷害保險은 生保社가 특약계약보험으로 損保社는 주계약보험으로 취급하며, 疾病保險은 재무부장관이 兩保險社의 겸업대상보험으로 지정하여 生保社는 定額報償을 원칙으로 하는 주계약보험으로 損保社는 實損報償原則의 특약계약보험으로 취급하며, 看病保險에 대해서는 生保社는 주계약보험으로 損保는 비용보험의 형태에 의한 특약계약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다.

第3分野의 保險에 대하여 서로의 영역이라고 生·損保間에 끊임없는 論爭이 있으며, 이 종목들의 시장은 현재 兩業者들 사이에서 치열한 競爭을 하는 樣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問題點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들의 商品理解 측면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켜 消費者 欲求(needs)의 充足이라는 保險業의 서비스觀點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으며 둘째, 保險業者들간의 불필요한 長期論爭에 의하여 내부적 손실이 많고 셋째, 保險市場의 國際化에 따라서 外國保險社의 國內進出時 또는 國內社의 外國進出時 混亂과 紛亂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명백한 정리가 요망되고 있다.

外國의 예에 의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일부 예외규정은 있으나 損保社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고, 日本에서는 질병보험은 生保社가 주계약으로 상해보험은 損保社가 주계약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는 生·損保社 모두 취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까지 生·損保社 모두에서 取扱하고 있는 우

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3분야를 生·損保 相互 本體業務로 許容하여 소비자들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방안이 될 것이다.

(2) 生·損保間 固有領域으로의 進出 問題

우리나라에서는 法律(商法과 保險業法)에 의해서 生命保險(人保險)과 損害保險사업의 兼營이 禁止되어있다. 先進國 경우에 英國(1982년이전에 설립된 composite(兼業)보험사에 한함)을 제외하고는 본체에서 겸영이 인정되는 나라는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子會社나 子매회사 방식을 통한 生·損保兼營은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엄격한 分離計定(separate account)의 원칙에 의하여 損保社와 生保社 간의 危險轉嫁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많은 회사가 生保社와 損保社를 兼營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引受技術의 발달과 재보험에 의한 危險分散 등으로 겸업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規模의 經濟性 및 保險業에 대한 마케팅과 資產運營의 技法을 極大化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개의 보험사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生·損保間의 相互進出時 철저한 리스크 차단장치와 分離計定 등을 전제로 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하여도, 生·損保 相互間에 동시에 대거 進入할 경우 상호의 영역에 대한 인력과 경험부족에 덧붙여 갑자기 증가된 경쟁 등으로 인한 保險市場의 混亂을 야기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生·損保市場에서 營業을 하고 있는 會社들의 數가 시장규모에 適切한 것인지의 評價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영역확대가 이루어지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生·損保社의 相互進入方式의 원칙은 子會社나 姊妹會社를 통한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식의 진출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객관적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實施時期에 관한 法律改正을 위해서는 충분한 事前研究가 필요하므로 단시일내에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他金融機關과의 業務領域調整

保險業法 9條에 의해 保險社는 他事業 兼營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保險會社の 財産運用準則」에 의거하여 他金融機關의 업무를 保險社의 附隨業務로 할 수 없도록 制限하고 있다. 그러므로 保險社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높은 편이며, 他金融業務와 他事業으로의 進出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保險社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附隨業務 分野에 대한 설명이다.

- 國公債 窓口販賣

현재 保險社는 國公債를 義務引受하고 있으나 이의 窓口販賣가 허용되지 않는 등 소화기능이 없으므로 국공채 강제인수에 따른 기회비용의 발생으로 收支惡化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保險社들은 國公債의 窓口販賣 許容을 要求하고 있다.

- 企業어음割引

현재 保險社는 商業어음割引業務만 허용되고 있으나 短期金融市場 活性化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한 中小企業支援機能 擴大의 효과를 있으므로 기업어음할인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함.

- 債券引受團 參與

現行法律에 의하면 保險社는 債券引受團에 참여할 수가 없으나, 현행 인수단 구성 기관이 적어 企業發行債券 소화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保險社들은 채권인수단에 참여하여 債券市場 活性化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채권인수단 참여를 바라고 있다.

- 保險金信託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保險金信託(예: 사망보험금 지급시 10년이내에서 분할 또는 거치지급 가능)은 保險事業과 有關한 業務이므로 계약자의 편리를 도모

하고 保險社에서 他金融機關으로의 資金移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制限的인 施行의 경우에도 定期預金利率만 適用토록 하는 등의 규제로 인하여 他機關에 비해 보험사의 競爭力이 低下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 支給保證 業務

保險社 所有財産은 他人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반면, 銀行(자기자본)과 證券社(자기자본 2배)의 경우 지급보증이 가능하므로 他金融機關과의 衡平性 차원과 短期金融市場의 發展이라는 의미에서 지급보증업무 허용을 요망하고 있다. 특히 支給保證業務는 기업에 대한 여신업무와 유사하여 보험사의 貸出審査 노하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므로 制限的인 支給保證業務를 당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外國換 業務

現在 外國換銀行에서만 外國換業務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海外有價證券이나 金融先物 등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시점에서 換率變動에 따른 換差損의 염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자산운용'이라는 목표를 저해하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환업무 취급을 요청하고 있다.

- 金融先物去來

保險社 資産의 危險防止(risk hedge)手段으로 有用한 수단인 金融先物の 去來가 현실적으로 不可能하므로 이의 허용을 위한 자산운용규제의 완화를 원하고 있다.

保險社가 요청하고 있는 위와 같은 모든 업무를 동시에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國公債 窓口販賣, 保險金信託, 金融先物去來 허용 등을 비롯하여 企業어음割引, 債券引受團 參與, 支給保證 業務, 外國換 業務 등의 制限的 허용 또는 時差別 許容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항 이외에도 保險社들은 리스, 팩토링, 창업투자(venture capital)신용카드, 부동산신탁, 토지신탁 등으로의 直接進出(子會社나 자매회사를 통한 兼業형태)이나 투자금융기관이나 은행 및 신용카드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提携商品의 販賣와 業務提携를 원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주장대로 이러한 業務擴張을 통해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綜合金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收益性提高를 통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겠으나, 業務의 무리한 多角化에 따라서 保險社의 事業危險率을 급격히 높여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시 保險加入者에 대한 保險金의 支拂能力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태 발생시 그 회사는 물론 保險産業 全體와 나아가서는 國家經濟에 심각한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美國에서는 1982년의 Heiman Report에 따라서 保險社의 業務多角化를 대폭 허용하고 資産運用의 規制도 緩和하여 이른바 Prudential Regulation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경영진의 자율에 많이 맡긴 바, 1980년대의 고금리, junk bond 투자손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Mutual Benefit Life와 Equitable등 전통적인 보험사들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심각한 사회문제화하자 1992년부터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ttee)에서 각종 규제내용을 보강하여 保險社의 他業種 運營과 資産運用을 統制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保險社의 業務多角化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허용기준을 정하고 허용의 범위도 漸次的으로 施行하는 方向으로의 政策改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서, 事業多角化에 따른 보험사의 사업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보험가입자에 대한 保護制度도 보강하여 保險金支給保證에 대한 積立制度의 確立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經營合理化, 情報化, 電算化

가) 募集經營管理의 改善方案

(1) 損害保險

損害保險 募集組織은 '募集人'(전체의 53% - 1991년기준), '代理店'(28.4%) 및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直給'(18.6%)으로 구성되어 있다(<表 30> 참조). 募集形態別 保險料收入은 대리점(56.6%), 모집인(22.6%), 그리고 회사 직급(14.8%)의 순이며, 공동 인수부문은 6.0%를 점유하고 있다(<表 30> 참조).

<表 30> 募集形態別 人員 및 保險料 現況

(單位: 명, 억원, %)

구 분	회사직급	모집인	대리점	공동인수	계
인 원 (구성비)	20,746 (18.6)	59,066 (53.6)	31,635 (28.4)	- (-)	111,447 (100.0)
보 험 료 (구성비)	6,998 (14.8)	10,728 (22.6)	26,795 (56.6)	2,780 (6.0)	47,301 (100.0)

損害保險 募集人の 登録 및 脱落 現況을 보면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과반수를 상회하는 높은 脱落率을 보이고 있으며(<表 31> 참조), 募集人 중 5年 이상 경력자는 단지 6.5% 뿐이며 1年 未滿 경력자가 45.9%, 3年 이하의 경력자가 82.1%를 차지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손보분야에서 전문성을 결여한 초급모집인이 대부분인 실정이다(<表 32>참조).

<表 31> 募集人 新規登録 및 脱落現況

(單位: 명, %)

구 분	1989	1990	1991
신규등록모집인수	18,744	25,659	32,848
년간 탈락자수	9,362	14,788	18,682
년간신규등록모집인수에 대한 탈락자수 비율	49.9	57.6	56.9

<表 32> 募集人 給付期間에 따른 分類 (1991년 기준)

(單位: 명, %)

구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모집인수	27,151	14,620	6,816	4,080	2,638	3,761
구성비율	45.9	24.7	11.5	6.9	4.5	6.5

代理店の 脱落率도 30%를 상회하며(<表 33> 참조), 5년 이상 경과한 대리점은 17.5%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1년 미만의 전문성을 결여한 대리점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년이하 대리점도 56.5%인 상태이다(<表 34> 참조).

<表 33> 代理店 新規許可 및 登録現況

(單位: 명, %)

구분	1989	1990	1991
연중 신규허가대리점수	6,779	7,159	8,874
연중 탈락대리점수	1,993	2,925	2,703
년간 신규허가대리점수에 대한 탈락대리점 비율	29.4	40.9	30.5

<表 34> 代理店 經歷期間에 따른 分類(1991년 기준)

(單位: 개, %)

구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대리점수	7,490	5,548	4,836	4,168	4,050	5,543
구성비율	23.7	17.5	15.3	13.2	12.8	17.5

이와 같이 非專門적이고 零細한 營業組織으로 인하여 單位生産性이 낮고 募集人の 可動率이 극히 열악하며 3원화된 모집조직으로 인한 사업비의 낭비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募集組織 内部에서의 등급간 영업범위의 차별로 인한 '경유처리의 문제'

가 발생하고, 모집인의 고정수당 지급액이 낮아서 모집인 및 대리점의 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代理店 育成을 위한 保險社의 初期定着段階의 支援策이 未洽한 상태에서 대리점들의 外形위주 實績競爭에 따른 경영부실로 인하여 경험있는 대리점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방화, 자율화, UR협상과 관련하여, 국내영업조직의 대응태세가 미비하므로 1996년 4월 예정인 外國의 獨立代理店 國內進出을 앞두고 국내영업조직의 보완적 조치가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募集人 및 專門性을 갖춘 代理店 育成을 위한 損害保險社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大型物件 취급기회 상실로 所得基盤이 脆弱한 代理店の 專門化 및 大型化를 유도하기 위해 保險募集의 職級制限種目を 緩和하고, 副業代理店の 育成을 위해 선택종목에 한하여 영업허가를 내주는 單種專業代理店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2) 生命保險

商品의 販賣가 전통적으로 女性募集人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生保産業은, 募集人의 個人的 資質과 모집인 및 보험가입자의 劣惡한 保險認識으로 인하여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생보사와 생보상품에 대한 一般國民의 인식을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UR協商 과정에서 外國社들은 독립대리점과 브로커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1994년 4월부터 複數代理店制度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生保社의 모집인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 판단된다.

募集人의 자질향상이 미흡한 결과 緣故中心의 不完全販賣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모집인 scout에 기인한 승환계약의 발생 등으로 우리나라의 生保解約率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表 35> 참조) 生保産業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般國民의 生保商品에 대한 否定的인 認識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35> 우리나라 및 日本의 實效解約率

(單位: %)

年 度	1989	1990	1991	일본 1991
實效解約率	27.0	29.2	29.0	4.3

生保業界는 外形위주(新契約, 收入保險料 증대) 경쟁으로 인한 募集組織의 확대에 치중할 뿐, 募集組織의 質的改善 노력이 미흡하다. 따라서 모집인의 大量導入, 大量 脫落現象이 심화되고 있다(<表 36> 참조).

<表 36> 募集人の 導入 및 脫落現況

(單位: 천명)

年 度	1987	1988	1989	1990	1991
導 入	165	183	215	263	258
脫 落	167	183	184	223	222

1987年 이후 26개의 新設社 및 外國社가 거의 동시에 營業을 개시함으로써 모집인의 scout 행위가 만연되어 있으므로 한 보험사에 1년이상 근무한 모집인의 비율은 매년 4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表 37> 참조)

<表 37> 募集人の 1年 以上 勤務比率

(單位: %)

年 度	1985	1987	1989	1991
比 率	31.5	39.9	39.0	39.2

한편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生保社들은 능력있는 모집인의 발굴과 육성에 무관심함으로서 募集人の 早期脫落 現象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체계의 미확립으로 인하여 모집인의 판매능력이 미흡하여 事後의 保險紛爭을 일으킬 소지를 생

산하고 있음에도 募集人育成 全擔人力에 대한 투자소홀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중이다.

각 保險社는 자체 人力養成을 強化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서 모집인 事前選別機能을 強化하고, 長期勤續 募集人에 대한 우대책 확대 및 모집인 의무교육의 최소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募集人 數에 비례한 적정인원의 트레이너요원과 육성지도장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募集人 定着率의 지도기준을 달성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현재의 募集人 給與方式을 改善하여 基本給을 높이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의 액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專業募集人에 대한 수당 및 복리후생을 우대함으로써 양질의 모집인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契約維持率의 향상을 위하여 모집수당의 2次年度 이후 이연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장기유지계약을 위한 ‘繼續手當’을 신설해야 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販賣채널의 多樣化 方案

(1) 損害保險

損害保險産業은 募集人, 代理店, 會社直給의 募集組織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모집조직의 판로를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企業保險은 주로 직급영업조직을 통해서, 一部 企業保險과 法人의 自動車保險은 대리점을 통해서, 그리고 家計性保險과 個人自動車保險은 募集人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된 조직에 의한 비과학적 緣故販賣로 인해 大衆 保險市場의 개척은 지난한 과제이며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만이 심화되어 있을 뿐, 自動化·情報化 時代に 적합한 새로운 保險需要에 대한 대처 및 보험소비자 needs에 부응하는 販賣戰略이 不在한 상태이다.

따라서 백화점, 공항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의 保險販賣 및 각종 서비스媒體와의 業務提携를 통해 그 매체들의 점포망을 활용한 판매방법 등 보험계약자에게 便宜를 提供하는 식으로의 販賣채널 多樣化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他金融機關과의

業務提携를 통하여 보험을 판매하므로써 보험판매방식의 다변화를 이루고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편익제공으로 대고객 서비스제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2) 生命保險

生保 代理店의 경우 一社 所屬의 專屬代理店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UR협상과 관련하여 外國社들은 獨立代理店과 브로커制度的 導入을 요구하고 있다. 財務部의 「保險市場 開放懸案에 대한 自由化 方案」에 따라 外國社의 요구대로 1994년 4월부터 複數代理店制度를 시행하고 1997년 4월부터 獨立代理店制度的 導入을 계획하고 있다. 一社專屬主義의 타성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복수(독립)대리점이 도입되면, 모집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고 판매조직간의 유치경쟁과열에 따른 사업비의 왜곡집행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복수(독립)대리점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現行의 專屬代理店體系를 整備하여 충실화를 유도하고, 복수(독립)대리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리점 자격 및 허가요건의 강화 등 내실있는 준비가 요망된다. 특히 複數代理店制度的 導入을 잘 활용하여 이 제도를 통해서 新設社들이 販賣費用을 節減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회사별로 特화된 商品의 開發 및 販賣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 監督體系

1) 事前 豫防的 監督

現行 規制方式은 實質的 監督主義로서 保險社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事前的 規制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내용을 보면 保險業을 수행함에 따르는 규제를 위한 '準則主義的 監督事項', 허가에 의한 '實質的 監督事項',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指導次元의 監督事項' 그리고 '消費者保護次元의 監

督事項'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현재의 過多한 新設生保社와 損保의 自動車保險 累積赤字 등으로, 生·損保産業 모두 어려운 상황이므로 開放化 및 金融自律化의 進展에 따라 不實經營과 保險金 支拂不能 사태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事前的 監督體系만으로는 적절한 資産運用과 經營의 合理性 등에 대한 評價를 適時에 하면서 문제가 있는 보험사들의 經營危機에 對處하기에는 未洽한 실정이다.

따라서 經營評價制度의 擴充과 이의 내실있는 檢査를 통하여 保險社 財務構造에 대한 객관성있는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保險社 經營管理의 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經營評價에 입각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알리는 公示制度의 확충으로 保險社의 責任있는 經營을 유도하고, 동시에 保險加入者 權益保護機能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自己資本規制의 강화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사의 소유자들에게 일차적으로 責任積立金の 충당을 책임지워 內實을 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自己資本規制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保險社는 倒産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보험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자율화에 따르는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을 증대시킬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保證基金의 運營을 보다 活性化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監督制度(機能別 監督體系 및 自律規制機構)

保險業의 監督行政業務는 현재 財務部와 保險監督院으로 二分되어 있다. 재무부는 許可權, 認可權, 承認權, 監督命令權 등이 있으며 보험감독원에는 監督權이 있다. 監督行政의 支援 및 協力機關으로는 保險開發院과 損害保險協會 및 生命保險協會가 있다.

그러나 監督業務의 分擔이 명확하지 않아 監督行政機關 相互間의 책임, 권한, 의무 등의 한계가 모호하여 被監督者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감독과 규제를 받기도 하며 자료의 제출이 중복되는 등의 부담이 있다. 保險産業의 초고속 성장으로 인한 保險業의 專門化, 大型化, 多樣化, 電算化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현재의 정기적 출장위

주 또는 민원에 의존하는 검사방식의 답습은 監督體系의 效率性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保險監督院의 財源이 被監督機關인 保險社의 業출에 의한 감독수수료 등에 의존하므로써 감독기관의 권위와 정통성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재무부와 보험감독원의 二元的 監督體系를 改善하여 양기관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부적이고 구체적인 감독사항은 보험감독원에 이양하여 보험감독원이 효과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아울러서 監督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豫算獨立을 통하여 保險監督院 業務의 純粹性을 확보하고, 先進國과 같이 保險社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감독수수료 등은 受惠者負擔原則에 입각하도록 해야 한다.

3) 去來者 保護制度

가) 保險情報 公示制度 補完

保險加入者의 입장에서는 保險市場에 수많은 회사의 각기 다른 상품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保險社와 保險商品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保險會社들과 保險商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合理的이고 主體的인 消費行爲를 기대하기란 무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監督機關은 각 保險社에 대한 經營評價를 公示하여 소비자들에게 각 보험사의 損益 및 財務狀態에 대한 情報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保險商品의 내용과 가격의 판별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商品別, 會社別로 비교 가능한 價格情報를 제공하는 제도의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나) 募集販賣制度의 改善

現在 一般消費者는 生命保險은 모집인, 損害保險은 모집인 및 대리점을 통하여 보

험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仲介人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이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大量増員·大量脫落 등의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商品勸誘方法에 있어 소비자의 형편에 적합한 商品의 권유보다는 手當이 높은 保險商品을 緣故人을 중심으로 권유하고 있으며, 解約控除金등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을 의식적으로 事前에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消費者의 不滿과 事後保險紛爭의 소지를 증가시키고 있다. 더욱이 保險約款의 用語와 내용이 복잡하여, 一般 契約者는 물론 보험모집인 등도 해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商品給付別 保險料의 比重에 대해 충실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約款制定 및 改正時 消費者 意見を 반영하고, 保險用語 및 約款의 單純化 및 統一化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募集人 및 代理店의 자질향상을 위한 中長期計劃을 마련하여 保險監督院이나 保險開發院 등을 통해서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教育業務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保險民願業務 補完

現在 保險加入者와 保險會社間에 紛爭이 생겼을 경우 保險監督院의 紛爭調停委員會를 통하여 保險民願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利用度는 낮은 편이며 一般 保險加入者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保險商品의 거래는 契約書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계약서의 내용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一般加入者가 用語와 內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保險仲介人들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保險紛爭은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一般 加入者들은 保險紛爭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保險商品에 대한 不信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保險商品에 대한 否定的인 認識이 국민전반에 확산되어 왔다. 따라서 加入者와 保險社間의 保險紛爭解決을 위한 制度의 보강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否定的인 認識을 改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保險紛爭 解決을 위한 專門機構의 新設을 검토할 수 있다. 보험감독원의 紛爭調停委員會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保險紛爭解決을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어느 집단의 이해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격을 갖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長期的인 眼目에 의한 專門機構의 設立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예와 같이 보험분쟁해결기구의 財源은 保險會社들에 의하여 調達되도록 해야 하는데, 원만한 保險紛爭解決이 궁극적으로 保險産業全般에 대한 이미지 改善에 도움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에게 利益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보험분쟁의 해결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客觀的인 각종 情報 등을 提供하여 일반국민들의 保險商品에 대한 理解와 效用度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保險에 대한 國民의 認識을 肯定的으로 轉換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1972년 6월에 옴부스만기구(Ombudsman Institution)라는 保險民願 解決機構를 創設하여 運營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가입된 保險會社들(生保社와 損保社)의 出捐에 의해서 財源이 調達되는 바 매우 영세한 小數의 地方社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분쟁해결의 임무를 맡은 紛爭調停委員(Ombudsman)들은 保險에 대한 專門知識 외에 냉철한 판단력과 성숙된 인격 및 봉사 정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중에서 선발하며, 이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신망을 받고 있다고 한다. 보험분쟁해결을 위한 이들의 중재결정은 法的인 拘束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紛爭當事者 대부분이 그 결정에 승복한다고 하며, 이러한 公信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여러가지 制度的인 義務條項이 부과되어 있다고 한다. 業務는 損害保險과 生命保險 등 保險社의 모든 業務에 해당하며 面談과 書面 및 電話 등으로 民願의 接受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유사한 민원을 분류하여 계속적인 민원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이의 개선을 위한 소견서를 보험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이를 토대로 약관의 개정 등을 함으로써 消費者 滿足度를 改善시킨다고 한다. 保險紛爭에 대한 사항 외에도 소비자의 문의에 따라 여러가지 保險情報를 提供하는 역

할도 하고 있다. 이 단체를 통하여 一年 平均 1,400여건의 정식으로 접수된 紛爭이 解決되고 있으며 加入者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간단한 분쟁은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체는 保險加入者와 會社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모두가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발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團體의 設立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保險加入者의 保護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保險産業育成과 國民經濟的 觀點에서도 有益한 役割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開放化와 國際化 現況 및 改善方案

가. 開放化 現況

국내보험시장은 1986년~1988年間 進行되었던 韓·美間 保險協商에 따라 여타금융 시장보다 일찍 開放되어왔다. 다음은 각국의 진출과정 및 현황에 대한 요약이다.

1) 美國

- 1986年 7月 1次 協商; 1987年 9월부터 국내에 진출해 있는 美國 損保社 지점의 화재보험 pool 참여를 허용. 자격있는 미국 生·損保社의 한국시장진출을 허용함.
- 1987年 9月 2次 協商; 1988年 1월부터 合作社, 子會社 지점 등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미국보험사의 모든 許可신청을 접수하고 許可基準 마련시 미국측과 협의토록 합의함.
- 1988年 3月 3次 協商;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합의하고 허가기준 내용중 “보험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조항은 미국보험회사의 허가신청이나 허가의 수를 제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임을 합의함.

<表 38> 外國保險會社 國內市場 進出現況

('92. 12 현재)

구 분	회 사 명	허가일	자본금	비 고
1. 生命保險會社 가.合作 (7)	동부에트나(美)	89.7.15	200억원	동부(49%) Aetna(51%)
	코오롱-메트(美)	89.8.17	118억원	코오롱(49%) Metropolitan(51%)
	고려씨엠(英)	89.8.17	180억원	고려통상(50%) CMI(50%)
	동양베네딕트(美)	89.7.15	120억원	동양시멘트(51%) Mutual Benefit(49%)
	삼신올스테이트(美)	89.10.21	400억원	삼환기업(50%) Allstate(50%)
	영풍매뉴라이프(加)	90.12.28	100억원	영풍그룹(50%) Manulife(50%)
	고합뉴욕(美)	92.12.2	65억원	고합(49%) 뉴욕(51%)
나.子會社(3)	한국프루덴셜(美)	90.12.17	200억원	Prudential(100%)
	프랑스(佛)	92.8.26	100억원	A.G.F.Int'l(100%)
	네덜란드(和)	91.12.4	200억원	N.N.N.B.V.(100%)
다.支店(2)	L.I.N.A.(美)	87.4.23	42억원	
	A.L.I.Co.(美)	87.7.27	50억원	
2. 損害保險會社 가.支店(3)	A.H.A. (美)	68.4.24	20억원	
	CIGNA (美)	68.5.15	10억원	
	Vigilant (美)	92.7.27	30억원	
나.持分參與(3)	Royal(英)	77.8.22	2,664백만	동양(17.8%)
	東京海上(日)	79.10.8	1,639백만	고려(12.2%)
	Continental(美)	80.3.5	655백만	제일(14.3%)
다.代理店(2)	Marsh & Mclennan(美)	79.6.29	50백만원	A.H.A 전속
	Johnson & Higgins(美)	91.8.7	8.6억원	안국 전속
라. 駐在事務所 (13)	日本(도쿄해상, 미쓰이해상, 스미모토해상) 英國(Sedgwick,Commercial Union, Bain Clarkson, Eagle Star, Willis Faber & Dumas) 美國(A & A, Guy Carpenter), 프랑스(S.A.F.R.) 獨逸(Munich Re), 스위스(Winterthur)			

상기 합의결과에 의거하여 美國保險會社の 경우 사실상 進出形態나 進出會社數에 관계없이 일정자격 구비시 國內進出을 許容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5개 生保合作社, 1개 生保子會社, 5개 支店(生保:2, 損保:3), 13개의 損保駐在事務所 및 2개의 損保代理店이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다(<表 38> 참조).

2) 美國이외의 國家

EC, 캐나다 등 美國 以外の 國家는 韓·美 保險協商의 결과를 들어 美國과의 同等 待遇를 요청하여 왔으며,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나 市場의 安全性 등을 고려하여 進出會社數에 制限을 둘 수 있음을 이해시켜 왔다. 그 결과로, 캐나다, 영국이 각각 1개사씩 合作形態로 또 네덜란드, 프랑스가 각각 1개사씩 子會社 形態로 進出했으며, 각국의 駐在事務所도 11개가 進出하여 있다.

나. 우리나라의 保險市場 開放政策

韓國政府는 UR協商 등에서 제기된 사항 및 國內에 進出한 外國保險社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自由化計劃을 마련(1992년 6월)하여 保險市場開放化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UR협상 등 市場開放에 관한 國際間 協商에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관한 협의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外國社의 國內市場進入에 관한 市場接近(market access)과 外國社의 國內市場 進出時 內國社와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라고 할 수 있다.

1) 市場接近

우리나라는 國內保險市場의 安全性과 保險需要 등을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外國保險社에 대하여 國內進出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外國社의 國內進出을 위해 진출조건 등 명료한 guideline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生保社의 경우에는 합작사, 자회사,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하고 損保社의 경우에는 기존사에 대한 합작과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하며 保險代理店 및 브로커(broker)업의 경우에

는 전속대리점 형태의 진출만이 가능하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복수대리점이 허용되고 있다.

1994년 1월 현재 外國保險社는 合作社, 子會社, 支店, 代理店 및 事務所 등의 형태로 31個社가 진출하여 있다(<表 39> 참조). 이 중 국내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합작회사 및 지점형태의 外國保險會社數는 生命保險의 12개사와 損害保險의 3개사 등 총 15개사이다.

<表 39> 外國保險社의 國內進出 現況

(單位: 개)

구분	합작사	자회사	지점	대리점	사무소	계
생명보험회사	7	3	2	-	1	13
손해보험회사	-	-	3	4	13	20
계	7	3	5	4	14	33

資料: 재무부 보험국

2) 內國民待遇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外國保險社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內國社와 동등한 內國民待遇를 인정하고 있는데, 外國保險社의 不動產取得에 대해서는 국내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다. 첫째, 業務施設用 不動產(총자산의 10% 이내)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시에 취득가능하며, 취득기준은 다음 <表 40>과 같다.

<表 40> 國內進出 外國保險社의 不動產 取得基準

외국보험사의 진출형태	부동산의 취득기준
합작사·자회사	영업개시 5년 경과, 총자산 규모 2천억원 이상
지점	영업개시 7년 경과, 총자산 규모 3천억원 이상
보유한도	업무시설용 토지로서 1,500평(4,950m ²) 이내

둘째, 投資事業用 不動産¹⁾ 취득의 경우 19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4년중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 國境間 保險契約

國境間 保險契約(cross-border)이란 國內에 事業場을 갖고 있지 않는 外國 保險會社와 國內 保險加入者間的 保險契約으로서, 우리나라는 1994년 1월 현재 輸出積荷保險의 국경간 보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여러 보험종목의 허용을 계획하고 있다. 各 分野別 國境間 保險契約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은 다음 <表 41>와 같다.

<表 41> 保險分野別 國境間 保險契約에 관한 規程

保險 分野	國境間 保險契約에 관한 規程
國際交易商品關聯保險	수출적하보험의 계약체결과 계약에 따른 보험료등의 대외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生命保險	원칙적으로 국경간 보험계약체결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 체결되지 않은 보험계약이거나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國際交易商品關聯保險外의 其他 損害保險	원칙적으로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의 기타 손해보험 계약체결은 불가하나,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再保險 및 再再保險	일부 특정보험물건에 대한 「국내사 우선출재제도」 및 「해외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일정한 제한 이외에는 국경간 계약체결과 계약체결에 따른 상호계약 및 차액의 송금 등도 허용하고 있다.

4) 其他 開放措置 事項(1994년 1월 현재)

國內進出 外國保險社의 生命·損害保險協會 加入을 1993년 1월부터 허용하고, 전국

1) 보험사의 투자사업용 부동산 취득(총자산의 5% 이내)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사업 목적과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한정하고 있다.

적인 보상망이 없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취급을 1993년 4월부터 허용하고 있다.

다. 向後 保險市場開放 推進計劃

한국은 다음과 같은 보험종목에 대해 추가적인 自由化 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1) 國境間 保險契約(cross-border)

1993년 1월부터 시행된 輸出積荷保險에 이어 1995년 1월부터 收入積荷保險과 航空保險의 國境間 保險契約 체결이 자유화될 계획이다(<表 42> 참조).

<表 42> 國境間 保險契約 開放化 日程

구 분	1993년 1월	1995년 1월 이후
보험종목	수출적하보험 (기초치)	수입적하보험 및 항공보험

資料: 재무부 보험국

2) 再保險

다음의 종목에 대한 국내사 우선출제제도 및 해외보험요율구득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表 43> 참조).

<表 43> 再保險 自由化 日程

구 분	1993년 4월	1996년 4월	1998년 4월
보험종목	항공보험(기초치)	선박보험	완전폐지 (화재, 특종)

資料: 재무부 보험국

3) 保險代理店 및 브로커(broker)制度

우선 2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複數代理店制度를 허용하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獨立代理店制度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表 44> 참조). 브로커제도는 향후 국내보험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입여건이 성숙된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表 44> 保險代理店 制度의 自由化 日程

1993년 4월	1994년 4월	1996년 4월	1997년 4월
손해보험 복수대리점 (기초치)	생명보험 복수대리점	손해보험 독립대리점	생명보험 독립대리점

資料: 재무부 보험국

라. 市場開放에 따른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損害保險

國內 損保產業은 自動車保險의 損失分을 他保險種目的 利潤으로 償却하고 있으므로 外國의 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國內 保險料率이 높은 편이며, 또한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海外駐在 保險社에의 원보험 가입 (cross-border)'의 영향 등으로 外國보험과의 경쟁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國內 損保產業은 收支基盤 취약과 영세성에 대비하여야 하나, 축적된 경영기법과 인력자원의 열세로 인하여 外國社와의 競爭에 고전할 소지가 많다.

國內 損保社들은 선진국에 비해 保險引受(underwriting)기법, 損害査定技術 및 保險管理制度 등이 크게 낙후되어 있으므로, 시급히 先進保險技法의 導入, 專門査定人의 育成, 經驗統計蕃積, 危險에 대한 情報管理體系 확립, 保險契約維持率의 改善 및 事業費執行의 合理化를 추진하여 經營效率을 提高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각 종류의 保險料率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을 거친 뒤 선진국 손해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는 販賣戰略과 販賣方式의 改善 및 補強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各 保險社가 自社의 경영여건과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의한 專門化(特化)의 방향으로 경영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품인가기준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예로, 現行 「損害保險 商品認可基準」에 의하면 어느 손보사가 개발한 單獨商品은 販賣 後 申告 (use and file)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상품에 대한 獨占販賣權이 인정되지 않아 損保社들이 상품개발에 의한 特化戰略이 소극적이므로, 특정 損保社가 개발한 單獨商品에 대하여 일정기간 獨占販賣權을 인정하여 상품개발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화유도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점진적인 자율화에 따라 각 보험사가 소비자들의 特定部類에 專門化하는 방향(예, 자동차보험 중 high risk 그룹별이나 low risk 그룹별 등으로)의 유도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각 회사의 專門性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生命保險

生保産業은 인지산업이며 우리나라 固有의 營業方式과 市場構造를 가지고 있으므로 開放에 따른 급속한 시장잠식의 우려는 매우 적은 상태이다. 특히 '既存 6社'의 경우 大型化를 이미 달성하여 規模의 經濟에 따르는 競爭力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中小型 生保社의 경우 外國社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내보험가입자의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多樣한 商品開發을 유도하여 中小型社의 特化領域을 확립시키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地方社의 경우 他保險社와 같은 商品을 緣故地 加入者에게 地域性을 호소하여 판매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住民特性에 알맞는 商品을 開發하여 그 지역에서 판매에 專門化하는 등으로의 戰略轉換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一律的인 商品開發基準 적용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이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여 보다 伸縮的이고 融通性있는 商品開發基準의 制度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國際化

保險產業의 國際化란 단순히 國內의 保險會社가 海外에 進出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되고, 多者間의 國際規範에 준하여 정부당국의 규제를 줄이고 各 保險會社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보험서비스의 자유로운 國際交易을 定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제 初期段階라 할 수 있다.

1) 損害保險

損害保險社들은 1970年代 駐在事務所 설치를 시작으로 海外에 進出하여 1992年 7月 현재 支店 7개, 現地法人 2개, 合作投資會社 5개, 駐在事務所 22개가 美國, 日本, 유럽과 東南亞등에 진출해 있다. 美國에는 주로 支店形態, 英國에는 現地法人形態, 그리고 東南亞 國家에는 合作形態로 진출해 있다. 損保의 海外進出은 生保와는 달리고유의 보험업무인 새로운 保險需要 創出 및 危險의 地域的 分散을 目的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도 있다. 해외에 진출한 보험사들이 비교적 양호한 영업활동을 하는 이유는 海外에 駐在하는 교포들과 상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東南亞지역과 中國 및 東歐圈으로의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교포와 상사 및 한국과 교역하는 現地の 外國企業들을 대상으로 한 小規模 營業은 어느 정도 전망이 밝은 편이다.

그러나 海外進出時 海外保險市場에 대한 事前情報不足, 海外營業經驗不足, 人力不足의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성급한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保險收支 惡化나 營業活動中斷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있으므로, 이제 본격적인 國際化 時代를 맞아 適切한 對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海外進出에 對備하여 우수한 保險人力을 擴充·教育하고, 海外市場에 대한 모든 정보(規制, 監督內容, 市場性등)를 수집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에 영업을 시작하도록 지도하고 市場의 多變化를 피하여서 北方國家들(러시아, 중국, 동구 국가들)로의

進出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現地の 損保産業이 落後되어 있는 東南亞國家 등에서도 長期的인 計劃을 수립하여 교포나 우리나라 상사가 아닌 그 국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그 국가의 保險市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綜合的인 對應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특히 교포나 한국상사에 국한되어있는 보험계약자들을 現地人이나 現地企業으로 擴大하는 戰略을 동남아 등 현지의 保險業이 落後된 國家에서부터 시작하여 海外營業의 經驗을 충분히 쌓은 후에 他國家로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多段階의 戰略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2) 生命保險

生命保險業界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주재사무소를 설립하기 시작한 이후 해외진출이 가속화하여 1992年 7月 현재 海外現地法人 5개, 駐在事務所 8개가 진출해 있다. 그러나 國內 生保社의 海外進出 活動은 극히 초기단계로 보험영업을 위한 진출은 全無한 상태이며, 주로 유가증권 투자목적의 해외진출이다. 1991년도 기준으로 국내 생보사 海外投資規模는 2개社(三星, 大韓)의 200億원 정도에 불과하며 收益率도 전체 운용자산 수익률(12.7%)에 비해 매우 低調한 상태이다.(三星:1.8%, 大韓:4.9%).

이와 같이 生保社의 投資規模가 零細한 理由 중의 하나는 政府規制라 할 수 있다. 財産運用準則 第6條에 의해서 生保社가 海外에 投資可能한 對象은 '外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株式 및 債券'에 국한되어있어, 신용도와 수익률이 높은 非上場 海外有價證券에 대한 投資가 不可能한 실정이다. 또한 海外投資限度도 總資産의 2%로 제한되어 效率的인 投資포트폴리오(portfolio)의 構成에 制限이 있다. 外國換銀行을 통해서만 金融先物去來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間接去來方式에 따른 運用效率性的의 沮害라는 결과 초래하므로 생보사의 해외진출 부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서 國內 生保社들은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科學的 投資技法에 대한 노하우 및 優秀人力의 不足으로 効果적인 투자를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非上場外貨證券 投資許容, 外國換業務의 制限的 許容 및 外貨證券에의 投資限度 擴大 등으로 자산운용의 국제화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행정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外國市場에서의 生保營業을 장려하여 현지인이나 교포 등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업무를 수행하면서 現地에서 資金의 調達과 運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國際化 戰略을 유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라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구하서, 보험학요론, 범문사, 1989.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 1993.

김동훈, 보험론, 학현사, 1992.

김박수, 김정수, 우리경제의 국제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4-06,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정책연구 94-05, 1994.

박승전, 현대보험의 이해, 한국경제신문사, 1987.

보험감독원, 1993년도 연차보고서, 1994.

보험감독원, 1993년도 보험통계연감, 1994.

신수식, 보험경영론, 무역경영사, 1985.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3.

Green, Mark R., James S. Trieschman, and Sandra G. Gustavson, Risk and Insurance, 8th ed., Cincinnati, Ohio : Southwestern Publishing Company, 1992.

Kimball, S.L. and F.M. Pfenningstorf, 1981, The Regulation of Insurance Companies in the U.S. and European Communities : A Comparative Study(U.S. : The International Insurance Advisory Council, Chamber of Commerce.)

Kimball, S.L. and H. Denenberg, Mass Marketing of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0.

Mehr, Robert I. and Emmerson Cammack, Principles of Insurance, 7th ed., Homewood, Illinois : Richard D. Irwin, Inc., 1980.

Schroath, Frederick W. and Christopher M. Korth, 1989 December, Managerial Barriers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U.S. Property and Liability Insurers : Theory and Perspectiv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6 : 630-648.

Sigma, 1993 March (Zurich :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1993 April (Zurich :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1993 June (Zurich : Swiss Reinsurance Company.)

Skipper, Harold D. Jr., 1987 March, Protectionism in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4 : 55-85.